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511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48	민홍철의원	2024. 12. 3	2025. 2. 11.
	2206730	허영의원	2024. 12. 19.	2025. 2. 11.
	2206977	김성원의원	2024. 12. 26.	2025. 2. 11.
	2207144	주호영의원	2024. 12. 31	2025. 2. 11.

-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25.2.18.)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교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임용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며,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장교 등의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 나.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10년간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
- 다.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안 제30조).
- 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8조제3항 등).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30조의 제목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을 "(특별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심사"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을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휴직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 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 다.
 -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적용한다. 단,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3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 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 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6의3. -----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 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신 설>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58 다) 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

>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한 사람

7. · 8. (생략) ③ (생략)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 | 제30조(특별진급) ① ------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7. · 8. (현행과 같음)

면제된 날

③ (현행과 같음)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 발위원회의 <u>심사</u>를 거쳐야 한 다.

②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 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2항 <u>단서</u>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u>심사</u>를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신 설>

,
심의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절차
<u>.</u>
·.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
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심의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 1. ~ 3. (생략)
-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 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 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만 해당한다.

가. (생략)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조(제적) ①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u>「</u> <u> </u>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
<u>·청소년의 성보호에 관</u>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생략) 5.·6. (생략) ②·③ (생략)

제48조(휴직) ① • ② (생 략)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58조제 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휴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3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
복무 부사관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 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④ ~ ⑧ (생 략)

제49조(휴직기간) ① ~ ③ (생 략)

-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 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 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 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1. (생략)
-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 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 <삭 제> 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휴직기간)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1. (현행과 같음)	
2	ਣ

직기간 <단서 삭제>

<u>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u> <u><삭 제></u> <u>여 휴직을 하는 경우</u>